

2013년 사랑드림장학금 신규장학생(GUCCI) 선발계획(안)

2012. 10.

I 선발계획

1. 추진배경

- 조성된 기부금을 활용한 사업 계획 및 집행으로 기부자의 숭고한 의도 및 깊은 뜻 구현
- 소외계층 가정 대학생들을 위한 학비 지원으로 인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인재 양성

2. 사업개요

- 신청대상
 - 국내 4년제 대학의 패션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
 - ※ 실기심사(여성용 핸드백 디자인) 응시가 가능하여야 함
- 신청자격
 - 국내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으로 1~3학년('12년 2학기 기준)
- 성적기준
 - 직전학기 평점 3.5이상/4.5만점, 3.3이상/4.3만점 또는 백분위 **87점** 이상
 - 직전 정규학기 최소 이수 학점 기준 : 12학점 이상
- 장학금 : 학기 당 최대 500만 원(등록금 범위 내 지원)
- 예산 : 50백만 원
- 선발인원 : 5명
 - 기부처 요청에 따라 2012년 2학기 선발 후 2013년부터 장학금 지원
- 지원기간 : 1년(2개 학기 지원)
 - '13년 1학기부터 '13년 2학기까지

3. 대학범위

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(학교의 종류)에 해당하는 대학
 - ※ 단, 기술대학, 방송대학, 통신대학, 방송통신대학, 사이버대학 및 전문대학은 제외

4. 장학금

- 등록금 범위 내 지원 : 500만원 이내
 - 사랑드림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 이중수혜 불가
 - 단, 등록금이 최대 지원 금액인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액에 한하여 타 장학금 지원 허용
 - '13년 1학기 사랑드림장학금 우선 감면

II 선발기준

1. [1차] 성적 및 소득분위 심사

- 재단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성적 및 소득분위로 심사하여 15명을 실기심사 대상으로 기부처에 추천
 - 추천 대상 중 인원변동이 있을 경우 기부처와 협의하여 조정

선발방법

단계	평가항목	배점
1단계	○ 적격여부 확인	-
2단계	① 성적평가 - 직전학기 대학 성적 평가 (취득평점/평점만점) × 100	20
	② 가계 곤란 정도 평가 - 소득분위 확인	20
총점		40

평가항목별 배점 기준

- 성적배점 기준(※소수점 셋째 자리이하 절사)
 - 계산식 : (취득평점/평점만점) × 100

점수	20	19	18	17	16	15	14	13	12	11
전비율	상위 5%미만	5%이상 10%미만	10%이상 15%미만	15%이상 20%미만	20%이상 25%미만	25%이상 30%미만	30%이상 35%미만	35%이상 40%미만	40%이상 45%미만	45%이상 50%미만
점수	10	9	8	7	6	5	4	3	2	1
전비율	50%이상 55%미만	55%이상 60%미만	60%이상 65%미만	65%이상 70%미만	70%이상 75%미만	75%이상 80%미만	80%이상 85%미만	85%이상 90%미만	90%이상 95%미만	95%이상

○ 가계 곤란 정도 배점 기준

점수	20	18	16	14	12	10	8	6
소득분위	1분위	2분위	3분위	4분위	5분위	6분위	7분위	8~10분위

□ 동점자 및 차순위자

- (동점자 처리기준) 신청인원으로 상대평가를 실시하여, 동점자 발생 시 아래 기준에 의해 선발
 - 기준1 : 소득분위가 낮은 자를 우선으로 함
 - 기준2 : 성적이 높은 자를 우선으로 함
 - 기준3 : 연소자를 우선으로 함

2. [2차] 실기심사

- 기부처에서는 재단에서 추천한 15명을 대상으로 실기심사
- 심사내용 : 여성용 핸드백 즉석 디자인 평가
 - 심사 현장에서 디자인 작업 실시
 - 디자인, 혁신, 기능성을 중점으로 평가

3. [3차] 최종 선정

- 재단에서는 심사자료를 통해 장학생 5명 선정
 - 최종 선발자 중 학적변동, 자진 포기 등의 사유로 선발목표 미달시 차순위 순으로 장학생 선발

III 장학생 관리기준

1. 장학금 계속 지원기준

- 성적기준: 정규학기 대학 성적 기준
 - 직전학기 평점 3.5이상/4.5만점, 3.3이상/4.3만점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
- 최소 이수 학점 기준 : 직전학기 12학점 이상
 - ※ 단, 4학년은 최소 3학점 이상

2. 장학생 학적변동

- 학적변동 시 해당학기 장학금 환수 및 장학생 자격 상실
 - 휴학, 자퇴, 제적 등 학적변동 시 해당 학기 장학금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며 장학생 자격 상실

<장학금 반환기준>

반환사유 발생일	반환금액	예시
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	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	500만원×5/6=4,166,660원
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	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	500만원×2/3=3,333,330원
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	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	500만원×1/2=2,500,000원
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	반환하지 않음	-

3. 장학수혜증명서 발급

- 수혜증명서 :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 신청 후 발급가능

4. 장학금 중복지원 방지

-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수혜할 수 없음
 - 등록금 범위 : 입학금, 수업료, 기성회비(기타 징수금은 포함되지 않음)
 - 중복지원여부 확인
 - 해당학기 및 이전 학기 장학금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중복사실 해소 후 지원 가능

○ 중복지원범위

구분	종류 및 내용
중복지원해당 학자금지원 및 대출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-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-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대하여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공공기관 및 법인(상사법인, 민사법인,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)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 -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-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
학자금 대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든든학자금(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), 일반상환학자금 및 WEST 대출 -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용자 - 타기관 학자금 용자 - 공무원연금관리공단,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, 한국산업인력공단, 근로복지공단, 국가보훈처, 국방부 등 예) 공무원학자금 대출,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,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,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, 근로자학자금 대부 등
장학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국장학재단 장학금(국가장학금 I, II 유형, 대통령과학장학금, 국가우수장학금(이공계, 인문사회계), 국가연구장학금(인문사회계), 국가전문대학우수장학금, 사랑드림장학금 등) - 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, 민간장학재단, 기업,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- 기타 정부지원 장학금 예) 군장학금, 국가유공자장학금,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등 - 'BK21', 'NURI' 등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장학금 또는 장학금 성격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
기타학비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학비 지원 -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'학비 지원제도'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
예외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근로수당(저소득층 위주) 또는 근로장학금, 지도교수의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지원받는 연구(보조)원 수당, 식비, 생활비, 또는 교육훈련비, 연수 체재비, 기숙사비, 간부장학금 등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함 (※ 단,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인 경우는 불인정) - 1회성 포상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

5. 장학금 탈락 및 지원중단

- 장학생은 재학 중 학적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소속대학 장학 담당부서에 통보
- 장학생이 재학 중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장학금 환수 및 장학생 자격 상실

- ①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
→ 장학생 자격상실 및 기 지급된 장학금 전액 환수
 - ② 직전 정규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 기준
→ 미충족시 해당학기 장학금 지원 중단 및 장학생 자격 상실
 - ③ 군입대, 질병, 출산, 여학연수,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휴학
→ 기 지급된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(장학금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)
 - ④ 학적변경(휴학, 자퇴, 타 대학 편입, 재입학 등) : 장학금 반환 및 장학생 자격 상실
- ※ 장학금 반납을 거부할 경우 향후 재단을 통한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중단